

영조대 노론 준론 이재의 신임의리 탕평론과 그 실현

최 성 환*

국문초록

본 논문은 영조대 노론 준론 산립의 영수로서 수많은 경화 자제들을 교육·배출한 도암 이재가 확립한 신임의리와 그에 기반한 의리탕평의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영조의 즉위 과정에서 발생한 충·역 의리를 가리키는 신임의리는 노론과 소론의 주장이 대립적이었다. 이를 영조가 어떻게 정리하여 사대부 공론의 합의의를 이끌어내느냐가 탕평정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이다. 정치의리는 붕당에 속한 인재를 적절히 배분하여 등용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탕평정치의 주도세력을 결정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다.

지금까지 영조대 전반의 탕평정치는 소론 탕평파가 제시한 의리론, 즉 신임의리에서 노론과 소론의 충·역을 절반씩 인정해서 절충한 정치의리를 기준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재가 대변한 노론 준론은 신축년과 임인년에 노론들의 행위가 모두 충인 반면 소론들의 행위는 역이라는 의리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탕평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매우 일당독재를 옹호하는 편협한 의리처럼 설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소론 준론에 치우친 『당의통략』의 의리론에 기반한 인식일 뿐, 영조대의 정치 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영조대 후반에 확정되고 그 이후 더욱 강화된 국시로서의 신임의리를 기준으로 노론 준론과 이재의 신임의리론을 분석·평가한 것이다. 이재는 영조의 정당한 승계 의리를 분명히 천명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노론 신하들의 충성을 명확히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탕평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노론의 의리가 거의 완전히 실현된 영조 31년 이후에도 탕평 정국은 유지되었다. 이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영·정조대의 정치 의리와 정국 동향에 대해서는 당대의 시각을 반영한 엄밀한 분석이 더욱 요청된다.

[주제어] 이재, 辛壬義理, 임인년 誣獄, 의리탕평, 탕평파, 노론 준론

목 차

- | | |
|-------------------------------------|---------------------------------|
| I. 머리말 | Ⅲ. 이재의 노론 준론 신임의리론 정립과 의리탕평의 실현 |
| Ⅱ. 영조대 전반 노·소론 절충적 신임의리론과 노론 준론의 동향 | Ⅳ. 맺음말 |

* 서울대학교 강사 / choevet@hanmail.net

I. 머리말

영조대 전반기 소론탕평에서 노론탕평으로 전환에 대한 탁월한 연구 성과가 있다.¹⁾ 이러한 연구들에 근간하여 노·소론 정치 세력의 동향이나 사상적 지향, 학파의 분화에 대한 연구 성과도 꾸준히 제출되었다. 아울러, 한원진, 이재, 김원행 등 저명한 인사들의 학문 성향, 정치론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에 의거해 영조대 전반 정치 세력의 동향과 그들의 탕평론에 대한 대체적인 파악은 가능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탕평의 주도 세력인 소론 완론 계열을 중심에 놓고, 완론 탕평이 노·소론 준론의 극단을 조정하다가 파탄나는 일련의 흐름이 강조되었다. 신임옥사를 노·소론 당쟁의 극단적 사례, 더 나아가 국가에 해로운 당쟁의 전형을 노정한 것으로 보는 전제하에, 양시양비론에 입각한 탕평파의 정당성을 전제하는 시각이다. 이는 다시 노론 준론은 탕평을 집요하게 반대하는 수구적 당파 세력으로, 노·소론의 완론과 소론 준론은 당쟁의 극복을 위하여 탕평을 성사시키려는 진보 세력으로 보는 시각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노론 준론은 완론 탕평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결국 영조대 전반기에 구축된 탕평정국을 무너뜨리고 후반기 노론 일당전제의 정국을 만들어낸 주역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이는 『당의통략』의 부정적 당쟁관과 소론 위주의 역사관으로 조선후기 정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다.²⁾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영조대 을해옥사 이후 전개된 정국의 실제 흐름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영조는 을해옥사 이후에도 탕평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建極’을 실현하였다고 존호까지 받았다. 을해옥사 이후에 소론 준론은 신축·임인옥사를 주도한 핵심 가문들을 제외하고는 정국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며, 청남 세력 역시 계속 진출하고 있었다. 비록 노론의 세력이 매우 커지기는 하였으나, 일당 전제라 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일당전제는 영조라는 강력한 군주가 허용하지 않았다. 신임의리 역시 국시가 된 이상 더 이상 노론만의 의리라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을해옥사 이후 신임의리가 확정될 때 소론 완론과 남인의 기여는 매우 컸으며, 청남 세력은 신임의리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내세우면서 탁남과 구별할 정도였다.³⁾

그렇다면 노론 준론은 탕평을 반대하고 일당독재를 주장한 것인가? 아니면 탕평은 찬성하나, 노론 의리에 기반한 탕평을 주장한 것인가? 사실, 반 탕평과 의리탕평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여, 노론 준론 중 의리탕평론자들은 노·소론 의리를 절충하는 탕평에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反 탕평론자로 분류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⁴⁾ 실제로 대개의 연구자들은 노론의 신임의리가 완전히 실현된 영조 31년 이후는 노론 일당독재이며, 정조 역시 노론의 신임의리를 부정하기 위하여 임오의리를 제창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노론의 신임의리에 충실하면서도 탕평을 주장하는 것, 즉 의리탕평은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1) 정만조의 일련의 연구는 영조대 전반기 정국 동향을 이해하는 데 지침 역할을 하였다. 영조~순조년간 탕평 정국에 대해서는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가 있다.

2) 최성환, 「이건창 가문의 당론과 『당의통략』 서술」, 『대동문화연구』 104, 2018.

3) 최성환, 「영·정조대 체제공의 정치생애와 정치의리」, 『한국실학연구』 33, 2017.

4) 박광용,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9, 68쪽. 박광용은 민진원, 이재, 이의현을 반탕평론자로 분류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의리에 입각한 탕평을 표방하고 있었다.

영조대 후반 이후 정조대까지 전개된 의리탕평은 철저히 노론이 주장하였던 신임의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의 전개에 의거할 때, 의리탕평론의 시각에서 노론 준론의 의리론과 역할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조대 전반 노론 준론 의리론의 중심에 있었던 李緯(숙종 6년~영조 22년)의 완론 탕평에 대한 비판과 신임의리관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는 영조대 노론 준론을 대표하는 산림일 뿐 아니라, 京華 지역의 노론 준론 인사들을 가장 많이 교육하고 조정에 진출시킨 인사이기 때문이다.⁵⁾

본 논문은 영조대 전반 노론 준론의 산림 영수 이재의 신임의리관과 의리탕평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당의통략』 이후 보편화된 소론 준론 탕평파의 기준이 아닌, 영·정조 당대의 기준에 입각하여 노론 준론의 의리론과 탕평정국을 재평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II. 영조대 전반 노·소론 절충적 신임의리론과 노론 준론의 동향

이재는 송시열의 학맥을 잇는 경화의 문장가에서 성장하여 科文으로 명성을 떨치며 23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노론의 증진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격무에 시달리는 춘추관의 하급 관료 시절에도 문장공부의 뜻을 다잡으며 「東·西都賦」를 수백번 읽는 것에서 시작하여 수년 동안 兩漢의 문장과 당송팔대가를 연마하는 등 문장가로서 명망을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나, 숙종대 후반 당쟁의 격화 속에서 모함과 질시를 경험하면서 기왕의 문장 공부를 후회하고 성인의 학문에 뜻을 두어 정진하였다.⁶⁾ 급기야 경종대에 신축·임인년의 ‘참화’를 겪은 후 산림의 학자로 전신하여 노론 준론의 영수로서 일관된 삶을 살았다.

이재의 조부인 李翺과 李翔은 김집·송시열의 맹렬한 추종자였다.⁷⁾ 외조인 민유중은 역시 송시열·송준길의 문인이며, 어머니 민씨는 인현왕후의 언니이자 민진원의 누이이다. 이재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 당대의 문장가이자 노론 花黨의 영수인 仲父 李晩成의 엄한 지도로 노론 의리에 투철한 문장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임옥사에서 아버지처럼 섬기던 이만성이 옥사한 충격으로 강원도 인제로 들어가 성리학 공부에 전념하였고, 영조대 초반부터는 경학에도 명성을 얻어 노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영조 1년의 을사환국을 맞아 이재는 정국 변동의 큰 기대를 갖고 출사하였으나, 이후 노론과 소론의 의리를 절충하는 탕평이 시도되고 그 기조가 유지되자 산림의 출처 원칙인 ‘難進易退’를 실천하며 끝내 영조와 불화하였다. 출처를 결정할 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준은 자신이 견지한 신임의리의 실현 가능성 여부였다. 그는 영조의 탕평정책이 잘못된 신임의리관에 기반한 것이라고 인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영조에게 직언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자신의交友나 문인들까지 독려하여 항론하게 하였다. 이재의 일생은 노론

5) 최성환, 「한천정사의 문인 교육과 향촌 강회」,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3~4쪽.

6) 『陶庵三官記』(보경문화사 영인본, 1989), 60쪽; 63쪽.

7) 이재는 경화 지역 인사들 뿐 아니라, 송시열·송준길의 충청 지역 문인들인 권상하, 정호 등과도 깊이 교류하였다. 조부와 중부 이래 계속된 가학의 인연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준론의 신임의리관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수많은 묘도 문자에서 상당 분량을 대상 인물이 신축 임인년에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상세히 언급하는 데 할애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신임옥사의 피해가 막대하여 노론에서는 영수급 인사들이 다수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재는 40대 중반인 영조대 초반부터 노론의 세도를 떠맡을 인물로 기대되고 있었다.⁸⁾ 이재는 영조대 초반부터 한원진, 윤봉구, 박필주 등과 더불어 거듭 정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이재가 노·소 절충의 탕평 정국 운영의 잘못을 비판하며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하자, 이러한 태도를 여타 인사들이 본받을까 염려하여 이재가 봉당을 심으며 조정에 진출한 관료들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는 등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출했다. 심지어, 이재의 아들 李濟遠이 史官이 된지 얼마 안 되어 중조부 이만성에게 화를 입힌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승지 李普昱을 피험하자, 영조는 이재의 잘못된 의리가 신진들에게 맹수보다 큰 해를 끼친다며 맹비난하기도 하였다.⁹⁾ 그러면서도 영조는 이재를 경학에 밝은 노론의 산림으로 인정하며 예우하였고, 거듭된 사직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소하였다.¹⁰⁾

요컨대 이재는 영조대 전반기 탕평의 기본 노선인 노·소론 절충의 탕평에 반대하는 노론 준론의 배후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조대 초반 노론 준론의 구성과 동향을 살펴보고, 이재가 이들과 어떤 관계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러 대신들이 홍문록에 권점하기 위해 빈청에 모였으나 완결짓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에 앞서 (필자 주 : 숙종대 후반) 趙泰采가 李晩成 등 여러 사람에게 배척당하여 봉당이 나뉘어 조짐이 있었는데, 이만성은 花田에 살았고 조태채는 駱洞에 살았으므로 화당·낙당이라는 호칭이 있게 되었다. 또 송시열과 송준길을 문묘에 종사하게 하자는 의논으로 인하여……박세채를 추존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지목하여 坡論이라고 했다.……이들이 마침내 낙당과 결합하였는데, 조태채와 그 아들 趙觀彬, 金樛와 그 아들 金取魯……申昉·任徵夏 등이 일당이 되었고, 화당은 노론의 淸類들이 모두 여기에 들었다.……이들은 신임사화 때에 같이 화를 입었기 때문에 거의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지금 임금이 등극한 처음에……토죄하는 논계가 이의전에 의하여 발론된 것이 많았는데, 그 啓文의 작성은 거의 임정하가 주장하였다. 민진원·이관명은 실권을 가진 大臣으로서 대양 이들의 문장과 기절을 칭찬하면서 기용하였으며, 조관빈은 지극한 원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더욱 흉당들에 대해 이를 갈고서 이들이 토죄에 공이 있다며 역시 극력 추천하였다. 이때 李宜顯이 이조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이들을 억제하였으므로……마침내 분당하였다. 민진원을 종주로 하는 자들은 낙당에 들어 있던 자들이었고, 조정의 名類들은 거의 이의현의 당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만 사세를 관망하면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간혹 이의현 당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민진원 당은 이들을 토역에 완만하다며 비난하였다.……

8) 『陶菴三官記』, 68쪽. ‘自入山以來與世隔絕,……耆德凋零, 此時世道專是熙卿(필자 주 : 이재의 字)之責也.’ 연보에 따르면, 이재는 경종 2년 麟蹄로 입산하였다가 영조 2년 花田 옛집으로 돌아왔다.

9) 『영조실록』 영조 13년 6월 14일. ‘緯於戊申後, 始作義理之說, 故儒生輩效之, 其流之弊, 甚於猛獸矣.’

10) 『영조실록』 영조 11년 7월 25일; 영조 11년 9월 11일.

이의현과 李秉常이 이를 불가하다고 하면서, “홍문록은 마땅히 정밀하게 뽑도록 힘써야 하는데 어찌 많이 취할 필요가 있겠는가?”하였다. 서로 논란하였으나 끝내 의견이 귀일되지 못하였다.¹¹⁾

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영조대 초반 노론은 숙종대 후반에 분화하였던 노론이 재결집하였다가 다시 분화한 것이라고 한다. 숙종대 후반 이래 노론은 탕평에 대한 대응과 학문적 연원의 차이를 이유로 화당과 낙당과 파론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조태채는 김창집·이이명·이건명·민진후·민진원 등 송시열을 추종하는 대신급이 속한 낙당을 이끌면서 별도로 박세채를 추종하는 파론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재의 중부인 이만성은 조태채 등 낙당계 대신들을 비판하는 청류의 영수로서 화당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¹²⁾ 이러한 분열의 흐름은 경종대 신임옥사 당시 노론 대신과 청류가 공동으로 참혹한 화를 당하게 되어 일단 불식되었고, 노론은 反 소론의 기치로 재결집하였으며 영조의 즉위에 따라 집권 세력이 되었다.

영조 즉위 후에 내려진 을사처분에 의거하여 노론은 신축년 옥사의 주요 피화자들을 사면·복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노론 준론을 이끌던 민진원·정호·조관빈과 같은 낙당·파론 인사들은 임인옥사가 소론이 조작한 무옥이므로 신축옥사와 같은 기준에서 신원·복관을 요구하는 한편, 임인년 무옥을 주도한 소론 준론의 대신들로 토역을 확대하는 데 진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론에 대한 토역론을 선도하는 의리를 청론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의천·임정하를 청선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론 준론에서 화당계는 낙당과 파론이 주도하는 토역의 기세가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淸選의 범위가 너무 확장되는 것에 반발하였다. 이의현·이병상 등이 이끌던 화당계 역시 노론의 신임의리에 투철하였을 뿐 아니라 노론 훈척 가문들이 다수 속해 있던 낙당보다 청론임을 자부하던 터였다. 그러나 이들은 낙당·파론처럼 소론에 대한 토역 의리에 편중되기보다는, 청류로서의 명망과 문장 능력까지 아울러 감안한 淸選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낙당·파론과 화당은 노론 준론으로서 모두 신임의리에는 투철하다고 자부했지만, ‘청’의 기준이 서로 달랐고 이는 다시 토역에 대한 적극성 여부로 연결되어 재차 분기하게 된 것이다.

노론은 집권 세력이 된 후 숙종대 후반 이래 분립하였던 낙당, 파론, 화당의 분파들이 신임의리 해석과 토역론을 둘러싸고 의리가 나뉘면서 다시 분열의 조짐을 보였던 것이라고 하겠다. 본래 일반 사류와 훈척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 의리, 곧 정치 노선의 차이는 숙종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하는 데에 근본 원인이 된 바 있었다. 중·하급 관료를 구성하는 일반 사류는 고관급의 훈척에 비하여 도덕적·학문적 순결성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에 峻峻한 의리를 주장한다고 하여 으레 청론 사류로 연칭되곤 하였다. 숙종대 후반 ~ 경종대의 정국에서 이러한 분화는 나타나고 있었다.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 등 노론 4대신이 주도한 낙당·파론은 국구 가문인 김진규와 민진후·민진원을 매개로 하여 훈척 가계와 혼맥으로 상호 연결되면서 국정을 이끌고 있었다.¹³⁾ 이들은 송시열·윤

11) 『영조실록』 영조 1년 6월 1일.

12) 이근호, 『영조대 탕평파의 국정운영론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1, 28~31쪽; 조준호, 『조선 숙종~영조대 근기지역 노론학맥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3, 129쪽.

13) 조준호, 위의 논문, 38쪽; 45쪽.

증간 사문시비에는 엄격하였지만 대체로 병신처분 이후에도 소론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는 형태로 숙종의 탕평책에 호응하였고, 존호 가상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존왕적 경향을 보였다. 더구나 조태채는 박세채의 문인으로서 낙당에 속하면서도 파론으로 인식되며 학문적으로 경시당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이들은 사문 시비에서 노·소론간 시비를 분명히 하였지만, 숙종의 탕평 의지에는 부응하고 있었다.¹⁴⁾ 숙종대 후반 이래의 낙당·파론 위주의 정국 운영은 경종대 초반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

이재의 스승이기도 했던 이만성이 이끌던 화당은 노론 4대신의 타협적인 처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청론을 견지하였는데, 이러한 성향 차이는 연잉군 건저·대리 문제에서도 드러났다. 이만성은 척신인 민진원을 통하여 노론의 대신들로 하여금 연잉군의 정당한 건저를 직접 요청하여 관찰시키도록 추동하였으나, 대신들이 李廷燾와 같이 연소한 언관을 내세웠던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¹⁵⁾ 이재 역시 노론 대신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 결정된 대리청정을 환수해 달라고 집단으로 庭請하는 것은 국가 대사에 임하여 사생을 거는 정정당당한 처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변인들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정청에 참여하지 않았을 정도로 대신들의 행태에 비판적이었다.¹⁶⁾ 훗날 이재는 『紹熙行禮記』를 저술하여 노론 4대신이 주도한 대리청정 환수의 정청이 ‘名·實과 心·口에 부합하지 않는’ 실책으로서 소론 홍도들의 기를 세워주고 청류의 마음을 뭉개어 화란의 빌미가 되는 행위였다고 냉철하게 비판할 정도였다.¹⁷⁾

이는 이재가 이만성이 이끌던 청론을 더욱 철저히 계승하여 노론 4대신의 신중하고 타협적인 처신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세제의 대리청정 요청을 4대신에 앞서 과감히 제기하였던 친우인 언관 趙聖復이야말로 진정한 청론 사류라고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¹⁸⁾ 이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신임옥사 이전까지는 낙당·파론이 탕평의 경향을 보였고 화당이 이에 비판적인 청류라 하겠으나, 영조 초 토역의리의 철저함을 기준으로 보면 낙당·파론이 더 청론이었다. 숙종대 후반의 이재는 중부 이만성의 화당에 속했으나, 영조대에는 낙당·파론의 일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가 파론의 영수 조태채를 재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재는 조태채가 박세채를 추종하고 존왕 경향에 순응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조태채는 신임옥사를 겪으며 죽음의 위기에서도 4대신 가운데 가장 의연한 모습을 보였고, 그 아들인 조관빈은 영조초 소론에 대한 강경한 토역을 이끌었다. 이재는 조태채의 당당한 처신과 조관빈의 토역론을 상세히 소개하며 칭송하였다.¹⁹⁾

영조대 초반에 이재는 탕평을 인정하되 시비를 명변해야 한다는 낙당인 민진원의 의리탕평론을, 소론에

14) 숙종대 후반 노론 탕평파와 노론 청론의 동향에 대해서는 정경희, 「숙종대 탕평론과 ‘탕평’의 시도」, 『한국사론』 30, 1993, 169~175쪽; 이상식, 『조선후기 숙종의 정국운영과 왕권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218쪽.

15) 『단암만록』(이희환(역), 민중문화사, 1993), 104~105쪽. 민진원은 이정소의 상소가 이이명의 부탁으로 올려진 것에 대하여, ‘대신이 스스로 아뢰어 청하지 않고 臺官의 손을 빌었으니, 그 죄는 크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청론 사류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이재의 『執義趙公墓碣』에 따르면, 조성복은 4대신 중 이이명과 가장 친하였다고 한다. 이이명의 간여를 암시하는 대목으로 추정된다.

16) 『陶菴先生年譜』 신축(경종 1년) 10월. ‘先生以玉署長官, 獨不進參於庭請. 儕友禍福恐動之言無所不至.’ 이때에 이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만성마저 정청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17) 『도암선생연보』 임술(영조 18년) 8월 辛丑, 跋紹熙行禮記.

18) 『도암집』 권34, 「執義趙公墓碣」, 35쪽.

19) 『도암집』 권48, 「右議政二憂趙公行狀」; 『도암집』 권28, 「右議政二憂堂趙公神道碑·代仲舅作」.

대한 토역론에서는 파론인 조태채 계열의 강경한 의리론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재가 청론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은 그 훈척이나 사류나 하는 출신보다는 충·역 의리의 정당성 여부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재에게 이 문제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던 경험과도 관계되기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사실, 숙종대에 화당에 속했던 이재의 선대는 청론 사류의 정체성이 강하다고 하겠으나, 이재의 당대에는 그의 모친이 인현왕후의 언니라는 인연으로 외척가의 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부 이만성의 사돈인 金鎭圭를 통해서도 숙종의 첫 번째 부인 仁敬王后 집안과 연결되던 터였다. 훈척가는 군주의 정국 조정 의지에 호응하는 한편으로, 당쟁의 砥柱로서 당파의 의리를 지탱해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였다. 이재 역시 원칙적으로 탕평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훈척가의 일원으로서 숙종대의 김진규나 민진후가 견지한 ‘사류·척리’의 자세, 곧 척신으로서 노론 의리를 책임지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²⁰⁾ 일찍이 중부 이만성은 처음에는 훈척인 김익훈의 비법적 행위를 싫어하여 소론처럼 처신하다가, 기사환국 후에 자신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송시열과 같이 김익훈을 옹호하는 것으로 돌아섰던 터였다.²¹⁾ 같은 맥락에서 이재는 경종대 노론 5포의를 이끌던 김용택이 속한 광성부원군 김만기 가문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연소한 청류의 관점이 아닌 왕실과 휴척을 함께 하는 척신의 일원으로서 김용택의 분수에 넘쳐 보이는 행위까지 왕세제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옹호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재는 노론 청론과 훈척에 모두 연결되었던 가문의 인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여,²²⁾ 정치적으로는 화당과 낙당은 물론 파론까지 아우르면서 문장과 성리학에 두루 능한 당대 노론의 산림 학자로 성장하였다. 그것은 왕실을 떠받치는 외척가의 일원으로서 노론 사류의 청론까지 지탱한다는 책임의식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가문 배경을 지닌 이재의 삶과 의리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부친이나 다름없던 중부 이만성의 억울한 ‘獄死’로 기억되는 ‘辛壬土禍’였다. 그는 중부가 ‘사회’를 당하여 죄가 없다고 확신하였기에 관청의 부의 물품과 친구들의 조문까지 사양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상례를 치름으로써 한사코 소론의 禍心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²³⁾

이로써 이재는 관료 생활에 충실한 문장가에서 학문과 출처 의리 모두에서 엄격한 시비를 확립하고 실천하는 산림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그는 충신과 역적을 가르는 시비명변의 기준으로 신임의리를 분명히 확립해야 했다. 그런데 영조는 즉위한 후 노론의 충을 인정했던 을사처분을 일거에 부정하고 소론의 의리에 기반한 정미처분으로 정국을 뒤집었으며, 소론 과격파와 남인이 연합하여 일으킨 무신란을 경험한 이후에는 노·소론의 의리를 절충한 기유처분에 동의하는 노·소론 완론 중심의 탕평책을 본격화하고 있었다.²⁴⁾ 이에 맞서서 이재는 노·소론 절충에 기반한 신임의리를 바로 잡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삼았다. 그가 탕평을 부정한 것

20) 『陶菴三官記』, 23쪽. ‘金公鎭圭・止齋閔公鎭厚數人獨持風裁, 群小甚忌之, ……以威晚干預時政爲脅持之資. 微二公則公議幾乎泯滅矣.’

21) 『陶菴三官記』, 5쪽. ‘吾仲父素惡金益勳……已巳凶黨復入……仲父方悔之, 曰吾年少時見識不明, 幾乎誤入矣.’

22) 조준호, 앞의 논문, 129쪽.

23) 『陶菴三官記』, 67쪽.

24)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진단학보』 56, 1983.

은 아니지만, 탕평은 노론의 정당한 신임의리가 인정받는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조대 전반 탕평책의 시행 과정에서 노론은 완론과 준론으로 분화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노론 준론 가운데 청론을 자부하던 인사들까지 신임의리에 대하여 일치된 의리론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숙종대 노·소론이 분열했던 경험을 환기하며, 노론 준론이 재차 분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는 노론 청론=준론의 의리론을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영조대 전반 노론이 준론과 완론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상 준론을 가리키는 청론 내에서도 분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영조대 전반 노론 준론 내의 분화는 앞 시기 숙종대 후반 화당과 낙당의 분화, 뒷 시기 동당과 남당의 분화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는 주로 신축 임인년 의리 가운데, 임인년 옥사와 관련된 의리 설정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노론은 영조가 ‘삼종혈맥’이라는 정당한 명분과 합당한 절차에 의해 즉위한 만큼 신축년의 건저·대리와 관련해 화를 입은 노론 4대신 및 중신들의 신원과 복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었다.²⁵⁾ 문제는 세 가지 수단(三手段)으로 경종을 시해하려고 모의했다는 임인옥사의 핵심인 노론 5포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엮었다. 이는 탕평책의 주창자들이 노·소론 의리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바인데, 소론에게 영조에 대한 역적이 있었듯이 노론에서도 경종에 대한 謀逆이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노론 청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

金鑣玉이 말하기를, ‘설령 양기가 회복되더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논의가 분열될 것이다. 옛날 광남 부원군(김익훈)이 노론과 소론이 분쟁하는 大關鍵이 되었는데, 김용택·이천기 무리의 문제도 그렇다.……연로한 숙덕들이 쇠락한 이 때에 세도는 오직 이재의 책무이다.’고 하였다. 산골에서 나온 후 이 문제를 의논할 사람이 없었는데, 당시에 김용택 등에 대하여 그 원통함을 풀고 복관하는 의논이 제기되자, 黃龜河는 홀로 그것이 불가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모 대감(필자 주: 이재)의 뜻 또한 이와 같다.’고 하였다. 황은 내 친우이지만, 내 뜻을 멋대로 헤아리고……이런 주장을 한 것이다. 대개 이것은 일신의 화복 차원이 아니라 참으로 군주 자신(聖躬)과 관련된 것인데도, 세칭 淸論이라 하는 자들은 모두 김용택 무리가 ‘布衣로서 지위를 벗어났기에 몸을 깨끗이(潔身) 하지 못하였다.’고 여겼다. 사람들은 혹 이 주장을 따라서 화답하거나, 심한 자는 힘껏 포의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은 마땅히 大體를 논해야 한다. 지난 날의 誣獄은 흉도들이 조작한 것이니 다만 일괄로 원통함 한 글자로 단정해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몸을 바치고 힘을 다한 것은 종사를 편안히 하고 군주를 보호하려는 데서 나왔으니, 마땅히 ‘충’ 한 글자로 단정해야지 다른 것은 논할 필요가 없다.²⁶⁾

위 인용문에서 김진옥과 이재가 속했던 낙당 인사들은 임인옥 전체를 조작된 무욕으로 보는 한편, 옥사를

25) 『영조실록』 영조 1년 3월 2일. 노론의 탕평파들 역시 같은 견해였으나, 다만 소론과 탕평을 위해서 노론의 의리론을 정치적 절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일 뿐이다.

26) 『陶菴三官記』, 68~69쪽.

주관했던 준소 핵심에 대한 토역론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청론을 표방했던 화당은 임인옥이 무옥임은 인정하지만, 훈척계인 4대신의 자제들이 주도한 포의들의 행실도 문제가 많다고 보았다. 이재는 친구인 황구하마저 자신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며, 노론 5포의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죽었으나 그들의 행위는 종사를 위한 충이 분명하므로 청론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재는 노론의 포의 인사들이 숙종 말 ~ 경종대에 걸쳐 ‘지위를 벗어나 깨끗이 처신하지 못하였다’는 완론 탕평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노론 준론 일부의 흐름을 대단히 우려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인옥사, 곧 삼수옥에 대한 의리를 신임의리의 대관건으로 설정하여 충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재가 보기에 노론의 신임의리를 관철시키는 대관건은 삼종혈맥 계승의 정당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신축년 노론 4대신 문제보다는, 세제의 계승을 저지하고자 노론 포의들의 행위를 역모로 조작한 임인년의 옥사에 있었다.²⁷⁾ 세제 무함의 단서는 신축년에 건저·대리를 저지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나, 임인년에 노론의 포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옥사를 조작하여 세제를 제거하려는 데서 절정에 달하였기 때문이다.²⁸⁾ 임인옥사의 본질은 노론 포의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역으로 조작한 후 연잉군까지 무함으로 엮어 정당한 승계를 저지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임인옥사를 평가할 때는 노론 5포의의 潔身=淸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그들이 견지한 의리상의 大體를 기준으로 시비를 논해야 한다. 세제를 보호하기 위한 노론 포의들의 행위가 사사로운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분수에 넘친 것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단죄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과 하등 관련이 없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리는 아래에 제시하는 민진원의 대체론과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마땅히 大體를 논해야 합니다.……당시의 儲嗣의 지위에는 전하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이들의 행위는 전하를 사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宗社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령 사적인 의도를 품은 한 둘이 그 사이에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사의 大計가 옳다면, 천리를 탐하여 자신의 공으로 삼은 자들을 죄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죄인은 아닙니다. 반면 온갖 방법으로 모함하여 聖躬을 위태롭게 한 자들은 모두 종사의 죄인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를 명백하게 갈라서 크게 의리를 밝힌 연후에 비로소 ‘이들은 종사에 공이 있으나 모인의 무슨 일은 선하지 않으며, 저들은 비록 종사에 죄를 지었으나 모인의 무슨 일은 용서할 만하다.’고 한다면 시비가 정해지고 공과 죄가 정당하게 됩니다.……지금 전하는 의리의 근원을 확고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지엽적인 데에 얽매어 있습니다.……역적 김일경과 목호룡이 종사의 죄인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모함받아 죽음 당한 자들 또한 역적이라고 합니다. 저 세세한 과실을 들추어내어 대체를 손상시키는 것이 매번 이와 같으니 진실로 신은 통탄스럽습니다.²⁹⁾

27) 군주무함 문제는 장을 달리하여 서술한다.

28) 영조 5년의 기유처분은 노론 4대신 가운데 김창집·이이명이 임인년 옥사의 주역인 悖子逆孫을 두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본 것이지만, 이는 탕평파들조차도 노론의 신원 요구를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구차한 절충론에 불과하였다. 결국 이들은 16년에 신원·복관된다. 기유처분은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설명하였기에(정만조,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1985), 본 논문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재는 노론 4대신의 충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임인년 옥사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진원은 대체론의 견지에서 경종의 질병을 반포함으로써 신축년 건저·대리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임년 옥사는 역모를 조작한 무옥이므로 노론 포의들을 신원하라고 요구하였다. 물론 노론 포의들의 행위 가운데 소소한 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부형이나 저군도 모르게 벌인 일이므로, 영조 자신과 관련되었다는 세간의 혐의를 신경쓰지 말고(遑遑) 분명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³⁰⁾

그런데 이재의 의리론은 민진원의 대체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다. 민진원은 탕평파가 김일경 일파와 노론 포의들을 같은 차원의 역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판했으나, 노론 포의들 역시 처신에서 소소한 과실은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재는 김일경 일파와 준소 신하들이 임인옥사에서 삼급수의 역모를 조작하고 이를 기화로 연잉군을 제거하려 한 것이므로, 옥사 연루자들에게 어떤 죄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리의 대체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민진원의 주장은 이재의 대체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애초에 민진원은 ‘이천기 등은 사대부의 자제로서 환관 잡류와 몰래 내통하고 심지어 왕자에게 들리게 해서 보답을 받으려 생각하였으니, 진실로 죽어도 餘罪가 있다.’³¹⁾고 하였는데, 위에서는 ‘죄인이 아닌’ 이들에게 ‘세세한 과실을 들추어내어 대체를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재는 ‘종사를 위한 노론 포의의 충성’을 준거로 하는 의리론을 을사환국 직후부터 확립하고 있었으며, 이는 노론 준론의 영수였던 민진원이 자신의 대체론을 일부 수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노론 포의들은 노론 4대신의 자제나 인척들로서 훈척계와 직·간접으로 연결되며, 그 핵심인 김용택은 정탐을 통해 경신환국을 유도한 김익훈의 후손으로서 그 선조와 유사한 탈법적 수단까지 동원한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었다.³²⁾ 이는 송시열 이래 노론이 공유하였던 의리, 즉 현명한 척신의 기여를 ‘청론’의 명목으로 제기하는 소소한 논란 때문에 배척하지 말고 종사의 안정을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헌신한 그 충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賢戚論의 연장이었다. 반면, 임인옥사를 조작하여 궁극에는 저군을 제거하려 했던 소론 준론 신하들의 흉악함은 엄히 토역하여야 한다. 이것이 의리의 대관건=대체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조대 초반에는 임인옥사를 기준으로 의리의 대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이재의 주장이 아직 노론 준론의 의리론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에 소론 완론의 탕평론에 호응하고 있던 홍치중·황귀하 등 노론 완론은 노론 포의들에게 씌워진 역명을 벗기고 신원 조치를 요구하는 민진원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론 포의들이 참혹하게 죽었기에 원통한 면은 있으나, 역적 목호룡 및 환관과 결탁·교유한 저들의 처신 또한 잘못임이 분명하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³³⁾ 영조 5년의 기유처분은 물론, 그 수정인 영조 16년의 경신처분, 17년의 신유대훈은 모두 이를 뼈대로 한 것이었다.

이재가 보기에, 이러한 완론 탕평의 의리론에 본래 탕평을 주장했던 원경하야 그렇다고 해도 이천보와 같

29) 『영조실록』 영조 9년 3월 1일.

30) 『영조실록』 영조 1년 2월 29일; 영조 1년 4월 11일.

31) 민진원, 『단암만록』, 148쪽; 156쪽, 즉, 민진원은 ‘그들에게 다른 죄가 있다고 하여도, 謀逆했다는 원통함’은 반드시 신원해야 한다는 정도에 머물렀다.

32) 김익훈의 정탐은 그가 국구 김만기의 季父라는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한다(『숙종실록보결정오』 숙종 8년 2월 19일).

33) 『영조실록』 영조 2년 4월 21일. 홍치중·황귀하의 이러한 주장에 민진원의 조카인 민응수가 헌납으로서 동의하였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은 노론 준론계의 청론 名士들이 휩쓸리는 것은 큰 문제였다.

원경하는 나와 더불어 송준길의 외손이다. 그는 김용택·이천기 등이 지위를 벗어나 공을 바랬다고 하여 불결하기에 마땅히 끊어야 한다는 의론을 힘껏 주장하였다. 여기에 호응하는 자는 이천보 등 여러 명사였다. 그러나 이천보의 숙부 李雨臣은 조카의 잘못을 통박하며, ‘너의 외조 金鑣龜 또한 셋길(私選)을 도모한 것이냐?’고 하였다. 하루는 원경하가 들어서 나의 뜻을 물어보았다. 나는 ‘김용택·이천기 무리가 지위를 벗어난 것인지는 논할 것도 없고, 비록 白望과 같이 천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홍적들에 의해서 조작당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당시에 옥중에서 죽은 이들은 귀천을 막론하고 4대신과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원경하가 ‘숙부님께서 이전에는 이들이 옳지 않다고 하더니, 후에는 세도 때문에 견해를 바꾸셨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군요.’라고 하니, 내가 ‘이는 중간에 나를 빙자한 虛說일 뿐, 나의 뜻은 본래부터 그렇지 않았다.’고 답하였다.³⁴⁾

신축년의 4대신과 임인년의 포의들의 행위는 그 본질에서 하나이므로 4대신의 신원을 주장한다면 포의들 역시 신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4대신과 포의들을 죽인 준소의 핵심 신하들 역시 토역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낙당과 파론은 토역론을 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화당계 인사들은 노론 포의들이 환관·궁인과 결탁하여 모의를 꾸민 행위 역시 사류의 지위를 벗어나 불법적 방식으로 추대의 공을 탐한 면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당이라 하여 옹호하지 말고 청론 사류의 기준에서 엄정하게 성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임인년 옥사를 완전한 무옥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소론 준론에 대한 토역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노론 완론의 탕평파들이 선도했고, 노론 준론의 명사들, 즉 화당계 사류들이 호응하고 있었던 의리론이었다. 임인옥 당시 피화하였던 포의들에 대한 의리론의 차이였다. 앞서 보았던, 노론 준론 내 ‘청선’을 둘러싼 낙당·파론과 화당의 인사 갈등은 그 일환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영조는 낙당·파론의 인사들이 주도하는 토역론을 제어하기 위하여 노론 준론의 낙당·파론 인사들을 대거 쫓아내는 환국을 일으켜 소론으로 하여금 탕평을 주도하게 하였다. 노론 완론이 소론 주도의 탕평 정국에 적극 참여한 것은 당연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탕평 국면에 노론 준론의 화당계 인사들은 영조에 의해 번복된 의리, 즉 노론 4대신의 완전한 신원과 복관을 적극 주장하는 방식으로 비판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재는 이러한 방식의 정국 급변 뿐 아니라 완론 탕평파들에 의해 좌우되는 탕평정국에 정면으로 대항하였다. 그 기준은 임인년 노론 포의의 신원과 복관이었다. 그는 임인년 ‘무옥’을 주관했던 준소 인사들과 그들에 의해 역적으로 단죄된 피화자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곧 임인년 의리 문제가 노론 준론의 분열을 저지하고 소론에게 넘어간 탕평의 방향을 바로잡는 ‘대관건’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영조 초까지만 하더라도 노론의 신임의리론은 분파에 따라 대응의 의리가 분명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영조와 노·소론 완론이 주도하는 절충의 의리에 노론 청론은 물론 민진원과 같은 낙당의 원로마저 노론 5 포의들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영조는 노론 준론 주도의 과도한 토역론을 제어하기

34) 『陶菴三官記』, 71~72쪽.

위하여 숙종대 후반 이래의 홍치중·김재로·황구하와 같은 노·소론 완론 탕평파를 중용하며 소론과 의리를 절충하여 탕평이 실현되기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는 영조 3년 소론을 위주로 정미환국을 단행하고, 그 후 영조 5년 기유처분과 영조 16년 경신처분,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한 영조 17년 신유『대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이었다.

Ⅲ. 이재의 노론 준론 신임의리론 정립과 의리탕평의 실현

영조대 초반에 이재는 노론 준론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강경한 의리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가 시비 판단의 준거로 제시하려는 것은 신임옥사에서 임인년 노론 5포의의 충절을 인정받고, 그들을 역적으로 조작하였던 소론 준론의 대신들을 성토하여 단죄할 수 있는 충역의 의리론이었다. 이것이 명확히 천명된다면 즉위 과정과 관련하여 영조가 받는 혐의·무함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고, 신축년 4대신의 충절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의 이러한 정치의리는 영조의 탕평정치와 양립할 수 있는가?

사실, 이재의 의리론은 영조의 지원을 받던 소론 탕평파가 노론 완론을 끌어들이려 결정한 탕평의 의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의 의리론이 실현된다면 노·소론 완론의 절충론은 설 자리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탕평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영조대 후반의 탕평은 이재가 대변하던 노론 준론의 의리론에 기반하여 전개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임옥사의 본질과 신임의리를 둘러싼 당쟁의 전개를 되돌아 본 후, 영·정조대의 정치사가 전개된 결과론의 맥락에서 노론 준론의 신임의리론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 신임의리는 한 덩어리로 취급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축년의 건저·대리 문제와 임인년의 삼수옥 사건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사안이다. 신축사와 임인사에 대한 인식과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을 막론하고 완론과 준론의 분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노론 준론 내에도 화당계와 낙당+파론계의 분화가 있었다. 영조 역시 자신과 인원왕후가 직접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노·소론의 갈등을 절충하는 중재 역할을 하면서도 왕통 승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한다는 분명한 목표 하에 시기에 따라 처분들을 변경하며 조절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신임의리 문제를 다룰 때에 이러한 사실 관계와 처분의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노·소론 공방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영조 즉위의 정당성 문제까지 정치적 시비 거리 차원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영조대 신임의리 논란을 정리해가는 큰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사안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소론 준론, 영조, 노론 준론의 신임의리관을 대비해 보고, 영조대의 신임의리가 결국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이재의 신임의리관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신축년과 임인년 사안에 대한 영조와 주요 정파의 의리

의리	사안과 인물	경종의 질병	신축년 건저·대리		임인년 삼급수 옥사		
			노론 4대신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재)	김일경과 疏下 6인, 준소 2대신(유봉휘·조태구)	연잉궁과 접촉한 노론 포의	연잉궁과 무관한 노론 5포의	김일경과 준소 3대신(이광좌·조태역·최석항)
소론 준론		無	三變과 경종에 대한 폐립·찬탈 시도로 유죄 ³⁵⁾	김일경 : 역적 소하 6인 : 정당(경종보호) 유·조 : 정당(경종보호)	경종에게 謀逆	경종에게 謀逆	김일경 : 역적 이·조·최 : 정당(경종보호)
영조/탕평파	己酉 처분	不明示	김창집·이이명(패자역손) : 유죄, 이건명·조태재 : 신원	김일경 : 역적 소하 6인 : 유죄 유·조 : 무죄(경종보호)	경종에게 모역	영조에 대한 矯誣悖逆	김일경 : 역적 이·조·최 : 정당(경종보호)
	辛酉 大訓	不明示	건저·대리 요청 정당	김일경 : 역적 소하 6인 : 유죄 유·조 : 유죄 혐의(건저·대리 저지)	정당	영조에 대한 矯誣悖逆	김일경 : 역적 이·조·최 : 정당(경종보호)
	乙亥 옥사	有	영조의 충신	김일경 : 역적 소하 6인 : 역적 유·조 : 유죄(건저·대리 저지, 영조무함 선도)	정당	영조를 위한 出位貪功	김일경 : 역적 이·조·최 : 유죄(영조무함 조장)
노론	완론	有	건저·대리 요청 정당	김일경 : 역적 소하 6인 : 유죄 유·조 : 언급 회피	죄인 또는 정당	영조에 대한 矯誣悖逆	김일경 : 역적 이·조·최 : 무죄
	준론	有	영조의 충신	김일경 : 역적 소하 6인 : 역적 유·조 : 역적(건저·대리 저지, 영조무함)	정당	영조를 위한 出位貪功 또는 충절	김일경 : 역적 이·조·최 : 역적 또는 죄인
	이계	有	영조의 충신	김일경 : 역적 소하 6인 : 역적 유·조 : 역적(건저·대리 저지, 영조무함)	충절	충절	김일경 : 역적 이·조·최 : 역적 또는 죄인

신임의리는 신축사와 임인사라는 두 가지 사안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충·역의 판단이 정파별로 정면으로 대립할 뿐 아니라, 시기에 따라 정파들 간에 합의한 의리의 내용이 변화하였다. 그 이유는 똑같은 행위에 대하여 충·역의 판단 기준을 경종에 둘 것인지 아니면 영조에 둘 것인지 여부, 절차적 정당성과 의리의 정당성 가운데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충·역의 처분이 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영조가 탕평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판단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노론과 소론의 확고한 의

35) 이 표에서 ‘유죄’는 죄는 있으나 역적으로 단죄하지는 않은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이 표는 정만조와 최성환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주요 정파 내에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경향만 보여준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

리론자들인 준론 세력을 배제하고 완론들을 내세워 인위적으로 의리 절충을 요구하였던 사정이 작용한다.

외형상 두 사안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세제의 계승 문제라는 본질에서는 같은 사안이기도 하다. 두 사안에 걸쳐 노론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세제에게도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기에 그를 역적으로 처단하는 데는 어떤 정파의 이론도 없었던 김일경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신축사에서는 건저·대리 요청에 참여한 노론 4대신과 이를 저지하려 한 소론 2대신이, 임인사에서는 세제 즉위에 기여하고자 변칙적 수단까지 동원한 노론 포의들과 이들을 역적으로 예단한 채 옥사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세제까지 위협에 빠뜨린 소론 3대신들이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영조의 정통성에 직결된 충·역 문제가 정파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찬·반만 지속할 수는 없기에 결국은 영조 31년의 을해옥사를 계기로 국시는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추이를 감안하면서 위의 표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을 이해해야 한다.

경종의 질병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건저와 대리를 요청하는 핵심 명분이기때문에, 신축사에서도 임인사에서도 관련자들의 충역 여부를 가리는 데 큰 관건이었다. 신축사에서는 연잉군 건저 요청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유봉휘의 발언(‘無人臣禮, 威福下移’)과 이미 성사된 대리청정까지 끝내 취소하게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행사한 조태구의 발언(노론의 대리 요청을 ‘將有廢立之舉’라 함)이 세제를 무함하고 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인지 여부, 정청 참여 신료들을 제거한 주역인 역적 김일경에 적극 협력하여 함께 서명·상소한 疏下 6인³⁶⁾을 김일경과 같이 역적으로 처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임인사에서는 연잉군을 추대하기 위해 궁인·환관들과 내통하여 궁중의 동향을 탈법적으로 탐지한 노론 布衣 인사들의 행위를 경종에 대한 반역으로 볼 것인지 영조에 대한 충절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로를 탐한 불온한 범죄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임인옥의 판정은 역적 김일경의 세제 무함과 제거 구상에 결과적으로 부응하여 임인옥사를 주관하고 ‘誣獄’을 조장한 이광좌·최석항의 행위와, 김일경이 ‘제학’으로서 지은 토역교문을 그대로 추인해준 ‘대제학’ 조태역의 의심스러운 행적과,³⁷⁾ 경종의 의약청을 공식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종이 마치 독살당했다는 의혹을 초래한 이광좌의 행위에 대한 충역 혹은 유죄 여부 판가름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소론 준론과 노론 준론은 신축년 임인년 사안에 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면에서 영조는 노·소론의 포용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 이 토대 위에서 자신으로 향했던 경종 독살의 배후라는 무함도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한 직후 자신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던 소론 준론을 물리치고 노론이 집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영조 1년 을사처분으로 신축년 건저·대리의 정당성이 천명되어 노론 4대신은 신원되었고, 임인년 옥사는 무옥임이 선언되어 피화자 역시 신원되었다. 반면 건저·대리를 저지하고, 무옥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왕세제의 지위를 위협하고 제거하려 했던 핵심 인물인 김일경과 목호룡은 처단되었다. 김일경은 소론 준론 중에서도 노골적으로 세제에 대립했던 강경파인데, 다수의 소론 준론 인사들이 그에게 협력했다. 이에 민진원은 토역을 건저·대리 저지에 앞장선 소론 대신들로 확대하였다. 이를 위한 명분으로 제시된

36) 김일경의 상소에 서명한 疏下 6인은 노론의 건저대리 요청이 ‘폐립·찬탈’ 시도로 규정하고 연잉군을 ‘회인·종무’에 비유함으로써 저군 무함을 본격 시도하였다. 이들로 인하여 신축사는 ‘土禍’ 수준의 옥사로 비화하였다.

37) 『경종수정실록』 경종 2년 9월 21일.

것이 경종의 질병을 공식적으로 반포하는 것이었다.

민진원을 필두로 노론들은 김일경은 경종의 질병을 기화로 궁중 세력과 결탁한 후 경종의 교지까지 조작하여 정당한 왕세제 대리청정 요구와 승계의 과정을 방해·저지였고, 소하 6인이라 불리는 김일경 일파와 소론 5대신은 김일경의 흉악한 역모에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마 협력한 역적이라고 성토하였다. 반면, 소론들은 신축 임인년의 조치들은 모두 소론이 개입하거나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 경종이 정상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소론이 한사코 경종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것(諱疾)은 노론의 무리한 세제 대리청정 요구를 경종이 건강한 정신으로 정당하게 거부한 것이고, 임인년 삼수 역모에 대한 처분 역시 경종의 정상적인 결정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⁸⁾

민진원은 소론의 주장을 부정하고 역적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종의 질병을 반포(頒疾)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반질론은 경종이 숙종의 뜻대로 삼종혈맥인 왕세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질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를 관철시킬 수 없었을 뿐, 영조의 즉위 정당성은 명백하고 노론 4대신의 충성 역시 분명하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는 ‘혈맥’의 왕위 계승을 원했던 숙종과 경종의 뜻이 김일경에 의해 부정되었던 ‘군주 무함’의 상태를 분명히 하고,³⁹⁾ 이러한 국면을 조성한 김일경과 준소의 핵심 협력자들을 토벌하라는 요구이기도 하였다. 비록 영조가 노론의 불량한 선비들인 포의들과 연관된 혐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삼종혈맥 계승의 정당성이라는 대체에 크게 관계없는 사소한 문제이므로 영조 스스로 사소한 혐의에 구애되지 않고 무시하면(遠嫌) 될 일이다.⁴⁰⁾ 결국 반질론은 숙종과 경종의 뜻을 무함·저지한 김일경 일파 처단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에게 협력한 조태구·유봉휘·이광좌 등 신임옥사에 책임이 있는 준소 신하들도 정당한 명분에 입각하여 토벌하라는 요구이기도 했다.⁴¹⁾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국의 안정을 꾀하는 영조에게 김일경 이외에 준소의 핵심 신하들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여겨졌다. 영조는 토역의 제어를 위해 이전과는 정반대의 정미처분을 내려 준소를 복귀시킨 후, 소론의 주도 하에 탕평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정반대되는 의리 번복과 환국의 결과, 영조는 일단 소론 과격파인 김일경과 임인옥의 고변자 목호룡만 역적으로 처단하였을 뿐, 김일경에게 협력한 준소 대신 및 소하 6인에 대한 토죄는 중단되었다. 그런데 영조 4년에 왕실과 조정에 남아있던 김일경의 잔당들은 영조의 경종 독살설을 기치로 삼남 지역의 사대부까지 선동하여 무신란을 일으켰다. 이를 진압한 뒤에 영조는 노·소론을 안배하는 탕평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면 대립하는 노·소론의 의리를 적절히 절충한 신임의리가 확보되어야 했다.

영조 5년의 기유처분은 신축년 건저·대리는 정당하므로 非逆이고, 임인년 삼급수의 옥사는 경종에 대한

38) 『도암집』 권49, 「鎮議政丈巖卿公行狀」 ‘凡今之謂先王不幸有疾, 爲羣凶所欺蔽. ……必欲諱其有疾, 以爲一番土禍. 盡出於審斷.’

39) 영조대 초반의 ‘辨君誣’는 왕세제를 승계시키려는 숙종-경종의 의지를 무함·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조대 ‘변군무’의 대상이 숙종-경종에서 영조로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66쪽 참조.

40) 『단암만록』, 148~149쪽.

41) 『영조실록』 영조 1년 2월 29일, 영조 1년 3월 12일, 영조 1년 6월 16일. ‘人臣無將, 將則必誅. 鳳輝之投疏逞凶, 危逼聖躬, 光佐……主張誣獄, 泰億……釀成賊虎之變, 鍛鍊羅織, 勒成誣告之案, 則苛·恒之情節, 俱極慘毒. ……伏望……以嚴天討, 以正國法.’ 『단암만록』, 153~155쪽.

역이라는 의리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론 4대신은 신원되어야 했다. 그러나 4대신 가운데 임인년 삼수역안에 이름이 오른 패자역손을 둔 김창집·이이명 2대신은 신원되지 않았다. 신축사와 임인옥사는 별도의 사건이지만, 임인옥사를 준거로 하여 긴밀히 얽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임인년 삼수역모에 이름이 오른 다수의 노론 포의들은 김일경과 같은 차원의 역적으로 대비되었다. 노론과 소론에서 모두 역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후에 기유처분은 노론과 소론과 남인 모두에서 역적이 나왔다는 三黨俱逆論으로 보완되었다.⁴²⁾

노론의 견지에서는 기유처분의 의리는 대단히 구차하고 부당한 것이었다. 애당초 임인년 옥사가 역적 김일경과 목호룡이 합세하여 일으킨 옥사이고, 국문을 담당한 이광좌·최석항 역시 김일경에게 협력한 준소 세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옥안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탕평은 임인옥안을 근거로, 신축년 건저·대리를 요청한 4대신 중 2대신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더구나 경종이 세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설을 전면에 내세우고 일어난 무신란까지 발생하였으나, 영조와 탕평파는 무신란의 원인을 고질병이 된 봉당과 당론에 있다고 진단하며 탕평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노론 준론은 반역의 원인을 잘못된 의리가 아니라 당쟁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영조와 탕평파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던 터였다. 이제에는 영조 즉위 초부터 신임의리를 올바르게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임의리의 본질이 ‘군주 무함’에 있고 이로 인하여 무신란이 발생한 것이니, 진정한 탕평을 위해서는 경종의 질병을 밝혀 영조가 받는 무함을 해명하고 충·역의 의리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⁴³⁾ 민진원의 ‘반질론’이 숙종과 경종이 받는 무함을 해명하여 노론 4대신의 건저·대리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가 제기한 그것은 숙종과 경종 뿐 아니라 영조가 받는 독살 간여의 무함 해명에도 비중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탕평파는 노론 준론의 ‘반질’ 요구를 거부하고 경종의 질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諱疾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었다.⁴⁴⁾ 이에 대해 이제는 탕평세력이 주창한 ‘휘질’이라는 잘못된 의리가 군주 무함을 초래하였고, 무신란 발생 후에는 ‘휘질’이 결국 전국적 반란까지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⁵⁾ 그러나 무신란의 근본 원인은 신임옥사의 목표인 군주 무함에 있고 신임의리의 대관건은 임인옥사의 노론 포의 문제에 있으므로, 영조의 정통성 천명을 위한 ‘변군무’와 신임옥사의 전후로 세제 무함을 선도·조장한 준소 세력에 대한 토역은 모두 동일한 선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영조는 노론 준론의 이러한 의리론을 거부하였다. 그는 ‘애초부터 해명해야 할 무함은 없었’으며 다만 자신은 ‘당론으로 인해 위협에 처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완론 주도의 탕평에 힘을 실어 주었다.⁴⁶⁾ 노론

42) 『영조실록』 영조 9년 1월 19일; 영조 9년 3월 6일. 노론은 임인옥의 5포의에서, 소론은 김일경과 박필몽의 무리에서, 남인은 목호룡과 이인좌의 무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43) 『도암집』 권6, 「入城後陳所懷疏」, 31~36쪽. ‘彼一番人,……煽動浮言, 熒惑人心, 終至指建儲爲廢立, 以代理爲篡奪, 則其將置儲君於何地. 然則不待鏡虎言出, 而殿下之誣, 已罔極矣.……殿下苟能痛析是非, 昭示典刑.……使皆知惡之可羞善之可慕, 則彼將悔舊圖新, 偕之蕩平之域.’

44) 『영조실록』 영조 1년 4월 8일; 영조 1년 4월 9일.

45) 『陶菴三官記』, 70쪽; 『도암선생연보』 戊申 3월조.

46) 『영조실록』 영조 9년 1월 19일. ‘黨論陷我, 黨論害.……三黨若此, 卽今要道, 惟才是用.’; 영조 9년 7월 11일.

준론은 영조대 전반기의 탕평 정국에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재는 출사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비록 노론 준론과 탕평파의 임인옥 처리의 방향은 달랐으나, 노론 준론의 집요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임인년 국안을 근거없는 誣獄으로 규정하여 파기해야 한다는 의론이 꾸준히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준소를 제외하고 노론 준론은 물론 탕평론자들에게서도 제기되었다. 영조도 임인년 국안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절실하였다. 임인년 국안에는 세제궁 소속의 궁인·환관이 영조의 처조가 서덕수를 매개로 김성행·김용택 등과 내통하였으니 삼급수 역모에 간여한 정황이 다분하기에, 영조 역시 삼급수에 간여되었다는 혐의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기유처분에 의해 임인국안 전체를 부정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세제의 궁속이나 자신이 직접 접촉한 노론 인사들만 신원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왕세제의 정상적인 승계를 위하여 자신과 더불어 여러 수단을 강구했을 뿐, 삼급수의 역모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었다고 국왕 자신이 보증하는 방식이었다. 더 나아가 ‘서덕수가 신원되었는데, 2대신도 마찬가지이다.’라며 2대신까지 신원해 주었다.⁴⁷⁾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권위적 방식으로는 영조가 삼급수 역모에 간여되었다는 의혹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결국 영조와 탕평파들은 경신처분(영조 16)에 의해서 임인옥을 무옥으로 공식화하여 그 옥안을 불태워 버리기로 하였다. 영조가 자신과 연결된 삼급수 역모의 의혹을 벗어나기를 갈망했던 결과이다. 그러나 영조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김용택·이천기 등 노론 5포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임인국안을 토대로 하여 별도의 逆案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로써 영조 17년에는 노론 4대신을 완전히 신원하고 임인옥안을 무옥으로 규정하여 파기하며, 그 대신 김용택·이천기 등 노론 5포의 역안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신유『대훈』이 완성되었다. 패자역손의 의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신축년과 임인년의 연결을 차단한 것이다.

이로써 신축년 건저 대리와 임인옥사는 완전히 구별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노론 의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⁴⁸⁾ 비록 이전보다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신유대훈 역시 여전히 ‘삼당구역론’에 기반하여 별도의 역안을 만든 이유를 설명한 것이고, 기존 역안을 폐기하고 별도의 역안을 만든 것 역시 노·소론의 탕평파들이었기 때문이다. 소론은 신축년 건저·대리에서, 노론은 임인년 5포의 삼수역에서, 남인은 숙종대 기사년에 더해 무신란에서 역적이 나왔다는 큰 틀은 변경되지 않았다.⁴⁹⁾ 대신, 탕평파는 탕평의 범위를 노·소론에 국한하지 않고 남인으로까지 넓히는 ‘대탕평’을 새로운 기치로 내세웠다.⁵⁰⁾ 이들은 임인국안 폐기를 계기로 영조에 대한 무함미 해소되었다고 보고, 영조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는 모든 당파의 인재 등용만이 당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탕평을 이루리라 기대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신유대훈에서 5포의 역안이 별도로 작성된 것은 영조를 향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47) 정만조, 『영조대 정국추이와 탕평책』,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43쪽.

48) 정만조는 경신처분·신유대훈이 소론탕평에서 노론탕평으로 전환하는 계기라고 보았다. 필자는 이를 탕평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대탕평’으로 보아야지, 노론탕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9) 본래 『대훈』에는 ‘三黨俱逆’이라는 어구를 썼으나(『영조실록』 영조 17년 9월 24일), 며칠 후 이 문구는 산삭했다(『영조실록』 영조 17년 9월 29일). 그러나 명시적 문구만 삭제되었을 뿐, 『대훈』에는 노론, 소론, 남인 출신 역적이 모두 설명되어 있다.

50) 『영조실록』 영조 16년 6월 5일 원경하의 상소; 영조 16년 7월 21일 오광운의 상소.

않은 상태라 볼 수 있다. 비록 영조는 서덕수·김성행의 경우와 달리 5포의와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연잉군 소속 백망과 궁녀들이 5포의와 연계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5포의의 혐의가 경종을 시해 혹은 폐위하려 했다는 삼수역에 있었고, 무신란의 명분 또한 연잉군의 경종 독살설에 있었으므로 양자는 연결될 여지가 다분하였다. 노론 5포의가 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 노론에서도 ‘矯誣悖逆’한 5포의의 역적들이 여전히 역적 김일경과 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신유대훈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절충론이었다.

남유용은 이재의 문도들을 대표하여 신유대훈에서 경종 질병을 명시하지 않았고 5포의도 여전히 역적으로 규정하였기에 ‘국론이 거칠게 정해졌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⁵¹⁾ 불만의 핵심은 신유대훈이 경종 질병을 명시하여 그의 죽음에 영조가 관여되었다는 의혹을 적극 해명하거나, 의혹의 근거가 되는 임인옥사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신유대훈으로 신축년 건저·대리의 정당성은 확인되었지만, 이제는 삼수옥과 관련된 영조에 대한 의혹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한편으로 이는 경종의 질병을 반포해야 한다는 민진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도, 신축년 건저·대리의 정당성은 공인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론 포의의 삼수옥이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연잉군 측이 5포의와 연계하여 경종을 시해 혹은 폐위하려 했다는 무함은 해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숙종-경종의 무함을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둔 민진원의 반질론이 지닌 한계이다. 이로 인해 영조와 탕평파는 5포의가 연잉군이나 노론 2대신과 전혀 관계없이 멋대로 패역한 일을 저질렀다고 규정하였다. 임인년 옥사는 무옥이지만, 5포의는 패역이라는 의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의 의리론에서 보면, 이는 영조와 탕평파의 주관적 바램일 뿐이다. 노론 준론 사이에서는 임인년 옥사를 무옥으로 규정하면서 그 핵심인 5포의는 여전히 역안에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재의 의리가 힘을 얻고 있었다.

이 옥사가 5~6명의 유생을 근간으로 한 것은 진실로 儲君(연잉군)을 무옥으로 폄박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오늘날 군주의 무함과 저절로 상관되어 있는 것이다.⁵²⁾

그는 영조 초부터 임인옥이 궁극에는 왕세제를 겨냥한 무옥이라고 선언된 이상 노론 5포의를 일체 신원하고, 무옥을 만들어 낸 소론 준론 대신들의 죄를 성토해야 영조의 무함이 해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영조와 노론 5포의의 관련에 대한 의혹 문제는 영조 16년에 발생한 ‘僞詩’ 사건으로 조정을 뒤흔들기도 했다. 이 사건은 숙종이 정유년에 이이명을 독대한 후에 노론 인사들에게 왕자들의 보호를 부탁하기 위해 시를 지어서 주고, 연잉군이 그 시를 받아 적어서 궁속인 白望을 통하여 광산 김씨 외척 인사인 金龍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일의 진위 여부가 문제였다. 김용택 등은 이 시의 취지를 받들어 주변의 포의 인사들을 모아서

51) 『영조실록』 영조 17년 10월 23일. 이 상소에서 남유용은 완전한 국론을 위해 이재를 불러들여 언로를 넓히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52) 『陶菴三官記』, 68~69쪽. 이 부분은 이재가 영조 1년에 올린 「入城後陳所懷疏」의 취지와 일치하므로, 그는 영조 1년 무렵부터 노론 포의들의 신원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잉군의 정상적인 승계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다양한 수단으로 헌신하다가 억울하게 삼수역모를 쓰고 처형당했다는 것이다. 이 시는 김용택 사후 그 아들이 부친의 신원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조현명이 그 존재를 알고 영조에게 진위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자신은 이런 시를 쓴 적이 없다고 끝내 부인하였다.⁵³⁾

조현명은 영조의 부인으로 인하여 이 시가 ‘위시’로 판명됨에 따라 영조의 ‘고죽청풍’ 같은 마음이 확인된 반면, 5포의의 경중에 대한 ‘패역’도 확인되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신유대훈에서는 노론 5포의의 죄가 거짓으로 ‘위시’까지 지어냈다는 ‘교무패역’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이 시가 ‘위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잣말로 증언거리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⁵⁴⁾ 또한 영조는 ‘위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분하였다가 곧이어 신원해 주는 등 통상의 역모 사건과는 달리 처분하였다.

게다가 이 시가 영조의 부인에 의해서 ‘위시’임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김용택 등은 연잉군의 궁속인 백망이 그 시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시가 숙종-연잉군-통해 전달된 御製詩인 것으로 알고 건저·대리 성사를 위해 헌신한 셈이었다. ‘위시’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연잉군도 백망을 매개로 김용택·이천기가 접촉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신유대훈이 국시로 확정된 이후에 이재의 종제인 閔亨洙가 영조의 엄한 ‘금령’에도 불구하고 ‘위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상소를 올린 것은 이러한 본질적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었다.

이 상소에서 민형수는 ‘임인옥을 무옥이라 한다면, 김용택 등에 대해서는 귀천이나 奇正得失을 따지지 말고 신원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⁵⁾ 이는 이재의 지론으로서 그와 충분히 상의하고 올린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⁵⁶⁾ 이재는 탕평 관료로 활약하고 있는 홍계희가 ‘위시’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호되게 꾸짖은 일까지 있을 정도로 지대한 관심사였다.⁵⁷⁾ 이재의 시각에서 보면 이 시의 진위 여부는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었다. 이 시가 진짜라면 더 좋겠지만, 설령 ‘위시’라 해도 5포의가 종사=세제를 위해서 충성한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조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금령을 어긴 민형수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지는 않았다. 이에 노론은 영조 역시 군주 무함이 분명히 해명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윽고 영조 22년에 노론 산림으로서 명망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이재와 출처를 함께 하던 박필주가 전면에 나섰다. 그는 군주 무함의 해명을 위해 경종의 질병을 신유 『대훈』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수치를 올렸다. 이에 대해 영조는 그가 조정에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을 했으며 높이 평가한 후 산림인 그를 이조판서에 임명하였다.⁵⁸⁾ 영조 초 민진원의 ‘반질론’

53) ‘위시’ 사건은 최성환, 「이건창의 당론과 『당의통략』 서술」, 『대동문화연구』 104, 2018 참조.

54) 『당의통략』(이덕일(역), 자우문고, 1998), 347쪽. 영조의 대답은 모호하여서 조현명도 그 취지를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영조는 인원왕후와 함침동안 의논한 후에, 4대신이 선조대 7유신과 달리 당당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하급관료의 힘을 빌었던 것을 책망하는 답변을 하였다. 숙종의 부탁을 받은 이이명이 5포의 인사들을 동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55) 『영조실록』 영조 18년 1월 27일.

56) ‘위시’의 최초 발설자인 민형수는 민익수에게 그 사연을 들었고, 영조가 이 시를 ‘위시’로 단정한 후에 민형수가 올리려 한 상소를 종형인 민창수가 올렸다고 한다(『단암만록』 「말문」). 민익수는 이재를 독실히 따라서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여쭙었다(『陶菴先生年譜』 권2, 임술년 11월조).

57) 『陶菴語錄(亨)』(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17-28), 113쪽. ‘洪令啟禧欲入, 先生拒門不納, ……聲色甚厲, 洪令垂涕還出俟罪門外. 蓋因閔副率(필자 주: 민창수)被鞠時事也.’

58) 『영조실록』 영조 22년 5월 24일; 영조 22년 5월 27일.

이 토역의 확대로 인식되어 한국의 빌미가 되었던 데 비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박필주는 영조가 받는 무함의 분명한 해명을 위하여 ‘반질’을 제시하고, 무함의 단서를 열거나 조장한 소론 준론 핵심에 대한 토역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의리론의 배경이 달랐기에, 영조의 반응도 달라졌다고 하겠다. 이를 계기로 노론은 김재로·원경하 등 탕평파까지 가세해서 소론 준론의 핵심 유봉휘·조태구·이광좌를 토역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 제기하였다.⁵⁹⁾ 영조 무함의 해명을 위한 반질론에 영조를 필두로 노론 탕평파가 적극 동조한 것이다.

이제는 박필주가 영조에 대한 무함의 해명과 이를 위해 임인옥사를 단련한 조태구·유봉휘·이광좌 토역을 말한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임인옥사의 핵심인 노론 5포의 문제를 의미하는 ‘『대훈』 하단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였다. 방향은 매우 옳았으나, 미진하다는 것이다.⁶⁰⁾ 이제는 박필주가 거론하지 못한 나머지 절반, 즉 노론 5포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고,⁶¹⁾ 영조 4년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출사 준비를 하였다. 이미 박필주가 이재의 조치를 건의하여 영조의 허락을 얻은 터였다.⁶²⁾

이제는 ‘이는 도를 행할 수 있는 여건이니, 나아갈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제자들에게는 중풍으로 인한 어눌한 발음을 세자가 들을 만하겠냐고 확인하는 등 서연에 본격 대비하였다.⁶³⁾ 그러나 출사를 준비하던 이재는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평생 ‘군주 무함과 관련된 충역의 근간’이라 여기던 임인옥 5포의 신원의 의리를 영조에게 직접 설명하지도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가 평생 견지했던 정치의리는 몇 년 후 을해옥사를 계기로 마침내 실현되었다. 영조대 전반 소론 준론의 증진으로서 대사간과 승지까지 지낸 申致雲이 역모에 연루되어 심문을 받던 중 영조의 면전에서 경종 독살을 언급하며 역심을 고백하자 군주 무함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영조는 노론 준론의 주장대로 경종의 질병을 명시하고, 소론 5대신에 대한 토역·토죄까지 단행하였다.⁶⁴⁾ 영조 42년에는 서지수·조운규 등 소론 준론의 동의까지 받아서 『대훈』에서 노론 5포의에 대하여 ‘삼수역’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그 죄도 용서한다고 명시하는 조치까지 내렸다.⁶⁵⁾ 마침내 정조는 이재가 제시했던 의리와 같은 근거로 5포의의 절의까지 완전히 인정하였다.

5인의 처지가 비록 4대신과는 달랐지만 大義를 쥐고 國事를 위해 죽었는데 어찌 그들의 마음까지 억지로 들추어 내면서 의리의 큰 곳까지 헐뜯을 수 있겠는가?⁶⁶⁾

59) 원경하는 민진원의 토역론이 4대신 신원을 위한 것이어서 잘못되었다면서, 이번의 토역은 영조 무함 해명을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거듭었다(『영조실록』 영조 22년 6월 2일).

60) 『陶菴集』 권11, 「與俞展甫-丙寅」 ‘纔送示儒賢入來後筵說數紙, 破鬱多矣. 大訓無人敢論是非, 今既好發端矣. 胡不并及下段某人事耶. 此亦係聖誣之大者, 而獨不提論.’

61) 『도암집』 권19, 「答李原明-丙寅」 ‘黎湖一出狼狽, 其所論義理, 得其半而遺其半. 此亦不見用.’

62) 『영조실록』 영조 19년 3월 27일.

63) 『도암어록(亨)』, 48쪽. ‘先生曰, 此乃行道之地, 可一出也.’; 56쪽. ‘丙寅之拜先生也, ……曰, 吾語音世子庶可聽認乎. ……門人及子弟乃知先生大有入侍書筵之意.’

64) 『영조실록』 영조 31년 5월 21일; 영조 31년 5월 20일.

65) 『영조실록』 영조 42년 10월 26일; 영조 42년 12월 20일.

이재는 소론이 주도하던 영조대 전반기의 탕평정국에서 영조 무함 해소의 관건을 임인옥사의 전면 재평가에 두고, 이를 위하여 소론 5대신에 대한 토죄와 노론 5포의 신원 및 충절 인정을 신임의리의 관건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그의 의리가 완전히 실현된 것은 정조대라 하겠지만, 영조대에도 을해옥사를 계기로 거의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조가 노·소론의 의리를 절충하는 데서 시작했던 탕평은 의리 절충의 작위성과 구차함, 그리고 영조 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소론 준론계 과격파의 망동, 그리고 이들과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한 소론 준론 영수들의 잘못된 의리로 인하여 결국 노론 준론의 의리에 따라 정리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임의리에서 노론 준론의 기준을 확립·제시한 이재의 식견과 역량은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론 준론 가운데 가장 투철하였다고 할 이재의 의리론은 과연 현실의 탕평정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이재의 많은 문인들이 영조대 전반 이래 탕평 정국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건대, 이재를 탕평론자로 분류할 수는 없다. 영조의 탕평에 비판적이었지만 그는 문인들을 통하여 탕평 의리의 재설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애 후반기에는 직접 출사하고자 준비하였다. 그는 정치세력의 절충을 위한 잘못된 의리론을 비판하였지, 탕평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재는 신임의리에 있어서 소론이든 남인이든 노론 준론의 의리를 인정한다면 함께 탕평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재는 신임의리에서 노론이 군자당이고 나머지는 소인당이라는 생각이 확고했기에 노론 우위의 인재 등용을 전제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봉당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노론 일당 전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⁶⁷⁾ 군자당과 소인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군자의 의리를 기준으로 하는 의리탕평이었다. 그는 신임옥사로 노·소론간에도 충·역 시비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흥적의 무리가 아니면 남인과 소인을 문하에 들여도 좋다고 할 정도로 봉당의 존재를 인정하였다.⁶⁸⁾ 실제로 그는 영남남인 가운데 노론의 신임의리를 인정하였던 安鍊石의 의리와 행적을 극찬하였고, 그 아들을 제자로 맞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 이재는 인물을 평가할 때에는 斯文이 아니라 충·역의 시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⁶⁹⁾

이재와 같이 주자성리학에 기반한 의리탕평론자들이 말하는 의리란 公物과 같아서, 봉당의 차이를 뛰어넘어 동의할 수 있는 이치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去朋黨’이라는 말 역시 현실의 봉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의리를 기준으로 패권의 사욕에서 발생하는 편당성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⁷⁰⁾ 이 점에서 이재와 같은 성리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봉당의 말이라 하여 모두 배척하지 말고 공적인 것은 수용하라.’는 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의리탕평은 봉당 간 세력 균형이 아니라, 의리의 시비를 기준으로 국시를 판정하고 공론의 합

66) 『정조실록』 정조 5년 1월 5일.

67) 『도암집』 권7, 「胥命後請同被罪謹疏」, 13쪽. ‘黨有君子之黨, 亦有小人之黨, 俱不可滾成一團. 而殿下不問是非, ……使羣下開口不得. ……是不幾於惡朋黨而欲去之者, 往往亡人之國者耶.’

68) 『도암어록(亭)』, 68쪽. ‘問, 南·少歸正, 來門下則如何. ……若非犯凶賊之類, 則受之可也.’

69) 『도암집』 권34, 「佐郎安公墓碣」, 7~8쪽. ‘然則似此義理大頭腦處, 不可以向來斯文是非, 談以世守, 而自陷於黨逆之科者明矣. 至如壬寅土禍, 戊申逆變, 實源於庚申己巳甲戌之事. ……此朝論之所由分而忠逆判焉. ……當壬寅獄時過公第, ……公以一紙抄獄事之出朝紙者示之曰, 此分明是誣獄, 其意不但在魚肉老論而止, 南少自此將盡爲逆矣. 嗚呼, 能的見於七八年之前, ……苟非識微之明, 何以及此.’

70) 시비명변에 의한 의리탕평론이 주자의 봉당론에 기초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정만조, 「봉당론」,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91~93쪽 참조.

의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⁷¹⁾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는 자신이 公義라고 생각하는 신임의리의 대체를 제시하고 이를 관찰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실제로 을해옥사 후에 합의된 국시는 노론의리와 유사하지만, 여기에는 준소와 남인 청론도 전적으로 동의하였다.⁷²⁾ 이는 잘못된 의리를 고수했던 소론 준론의 통렬한 자기 반성이 전제된 것이었다. 이후 소론 준론의 영수 이종성은 을해옥사 후 이광좌를 사표로 삼았던 자신의 잘못된 의리를 인정한 채 영조의 조령에서 판중추부사로서 계속 활동하였다. 이종성은 본래의 계통인 소론 탕평론자 이태좌의 아들로서⁷³⁾ 노론 준론의 지도자 유척기와 ‘異趣投合’하면서 세자 보호의 정국을 이끌었다. 소론 준론에서 유봉휘·조태구·이광좌·최석항의 직계는 배제되었지만, 그 밖의 주요 가문들은 여전히 탕평정국에서 출사하였다. 이전과 달리 노론이 우세하고 소론이 열세가 된 형국이 전개되었지만, 노론의 의리가 실현되었다고 해서 소론 준론의 진출을 막은 것은 아니었다. 영조대 후반에 노론 준론의 의리에 기반해서 국시가 형성된 후, 국시는 더 이상 노론 준론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조대 후반에 성립된 의리탕평의 기조는 정조대에도 지속되었다.

노론 준론 역시 을해옥사 이후 단일한 집단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분화·재편되었다. 그 계기는 영조 30년을 전후하여 노·소론을 막론하고 전개된, 세자 보호론과 세자 위동론의 대립과 정치 세력 재편이다. 기존의 당파를 연원으로 하되, 세자에 대한 의리를 기준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분파의 분열이었다. 새로운 정국 현안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정치의리가 형성되면 기존의 정파는 계속 분화·재편되고 있었다. 군주의 황극이 건재하는 한 어느 한 세력의 독점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 조선후기 당쟁의 특징이었다.

노론 준론은 북당, 동당, 남당, 중당으로 분열되어 상호 경쟁·대립하였는데, 이재 문하의 인사들 역시 각 분파로 나뉘어 처신하였다.⁷⁴⁾ 남당에서는 조영순·윤급과 민우수 등이, 동당에서는 송명흠·조중회·김원행 등이, 북당에서는 홍계희가 활동하였다. 이들 중 송명흠과 조중회는 사도세자의 충신으로 평가되어 훗날 정조의 대우를 받았고, 홍계희는 사도세자의 역적이 되어 완전히 몰락하였다. 이재 문하의 의리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기에 의해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정치 세력과 의리도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재가 대변하였던 노론 준론의 의리탕평론 역시 노론 일당 독재론이나 반 탕평론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IV. 맺음말

영조대 전반의 탕평은 소론 완론이 주도하고 노론 완론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신임

71) 논리상으로는, 결국 군주가 의리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이를 황극이라 하는데, 황극은 천리에 기반해야 신하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천리에 기반한 황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 당의 의리론은 충돌하기 마련이다. 황극과 천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72) 최성환, 「영·정조대 체제공의 정치생애와 정치의리」, 『한국실학연구』 33, 2017.

73) 영조는 을해옥사 직전 이광좌에 대한 성토가 한창일 때, 이광좌의 8촌 형제이자 준소로서 탕평에 협력했던 이태좌를 새삼 높이 평가하였다.

74) 『영조실록』 영조 34년 7월 9일, ‘老黨……又各分裂……東黨·南黨·中·北黨, 互相傾軋.’

의리에 대한 노·소론의 세력을 고려한 적절한 의리 절충이 필요하였다. 신임옥사에서 부친이나 마찬가지로 仲父를 잃었던 이재에게 이러한 절충은 정치적 이해 관계를 앞세운 구차함의 결과였다. 노·소론의 탕평파는 신축년 노론 4대신이 추진한 건저·대리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임인년 삼수옥에 연루된 노론 포의 인사들의 역모를 전제로 준소 급진 세력의 역적과 대비시키는 의리론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이 때, 노론 4대신 가운데 2대신의 자손이 임인옥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주장은 구차함의 전형이었다.

상당수의 노론 준론 인사들이 이재와 같은 마음에서 완론 탕평의 거짓된 의리와 이에 동의한 인사들로 형성된 노·소론 연합 세력을 탕평을 빙자한 당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그러나 영조의 강력한 의지로 현실의 정치는 탕평당이 주도하였고, 탕평 정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론 역시 신축 임인년의 처신이 모두 옳지는 않았다는 자기 비판도 제기되었다. 청론을 표방하는 노론 준론의 명사들 가운데서도 신축사와 임인사를 구분하는 의리론이 그것이다. 아울러 노론에서는 경종대 이래 봉합되었던 화당과 낙당·파론의 재분화가 전개되고, 이와 맞물려 준소 인사들에 대한 토역의 범위, 청론의 기준을 문장 능력과 토역 의리 중 어디에 둘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이재에게 숙종대 서인이 끝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대립하였던 경험을 상기시켰다. 그는 노론 준론 산림의 영수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신임의리의 대관건과 토역의 방향을 정립하고, 조정에 진출한 문인들에게 이를 관철시키도록 독려하였다. 그가 시비 판단의 준거로 제시하려는 것은 신임옥사에서 신축년의 건저·대리의 정당성 뿐 아니라 임인년 노론의 포의 인사들이 세제의 즉위를 위하여 노력한 충절을 인정받고, 그들을 역적으로 조작하였던 소론 준론의 대신들을 성도하여 단죄할 수 있는 충역의 의리론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경종의 질병이 분명히 선포됨으로써 영조가 건저·대리 및 즉위 과정에서 받았던 혐의·무함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세제를 도운 노론 신하들의 충절과 이를 방해 혹은 저지한 소론 신하들의 죄역도 당연히 인정되리라 보았던 것이다.

이재가 평생 견지했던 정치의리는 그의 사후에 을해옥사를 계기로 실현되었다. 비록 심문을 받던 중이라 하나 영조대 전반 소론 준론의 촉망받던 인재들이 경종 독살설을 거론하며 역심을 드러내자, 영조는 노론 준론이 주장하던 군주 무함의 해명과 토역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영조는 경종의 질병을 명시하고 소론 5대신에 대한 토역·토죄까지 단행하였으며, 노론 5포의의 신원까지 허용하였다. 영조대 후반 이후의 탕평은 이재의 의리론이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재의 의리탕평론은 영·정조대 노·소론 절충의 탕평을 깨뜨리고 노론 우위의 의리탕평이 구현되는 방향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그는 철저한 노론 준론 의리론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노론의 신임의리에 근거한 탕평도 추구하였다. 그는 학맥과 색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충역의리에서는 진정한 시비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재는 노론 준론 의리탕평론자라 할 수 있다. 그의 의리탕평론을 노론 일당독재론이나 반 탕평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후기 정치의 특징인 봉당정치의 구도에서 시행된 탕평책은 신임의리가 확정된 영조대 후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景宗修正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陶菴集』(한국문집총간 영인본) 『陶菴三官記』(보경문화사 영인본, 1989)

『丹巖漫錄』 『黨議通略』

『陶菴語錄』(국립중앙도서관 古朝17-28)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근호, 『영조대 탕평파의 국정운영론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1.

이상식, 『조선후기 숙종의 정국운영과 왕권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조준호, 『조선 숙종~영조대 근기지역 노론학맥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3.

정경희, 「숙종대 탕평론과 ‘탕평’의 시도」, 『한국사론』 30, 1993.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진단학보』 56, 1983.

정만조,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1985.

정만조, 「봉당론」, 『조선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정만조, 「영조대 정국추이와 탕평책」,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최성환, 「한천정사의 문인 교육과 향촌 강회」,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9.

최성환, 「영·정조대 채제공의 정치생애와 정치의리」, 『한국실학연구』 33, 2017.

최성환, 「이건창의 당론과 『당의통략』 서술」, 『대동문화연구』 104, 2018.

* 이 논문은 2020년 2월 27일에 투고되어,
2020년 4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4월 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Argument of Tang-pyeong Based on Lee-Jae(李緯)'s Sinim Euli as Noron(老論) Junron and Its Realization during King Yeong-jo's Reign

Choe, Seong Hwan*

This study is on a new Sinim-Euli arguement and Euli-Tangpyeong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Lee-jae who had produced numerous Gyeong-hwa-ja-je(a youngman of noble birth in Seoul), as the leader of Yeong-jo reign's Noron Junron(principled faction).

In the process of King Yeongjo's ascension, a argument of Sinim-Euli(辛壬義理) was in contrast to Noron and Soron. The key to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Tangpyeong politics is how King Yeong-jo organizes them well and leads to an agreement between the literati officials.

Political justness is a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the leading forces of Tangpyeong politics, as it is the basis for the proper allocation of talented persons belonging to the parties. Until now, the Tang-pyeong politics of Yeong-jo reign was being studied based on the politics of compromise, which was based on the justification suggested by the Tangpyeong faction. It means Noron and Soron was recognized by half the justness of loyalty and rebel Sinim-Euli.

By this standard, a argument of the Noron Junron represented by Lee-Jae was explained as a narrow-minded justification. Because Lee-Jae claimed that Noron is loyalty and Soron is rebel. This understanding is based only on "Dang-ui-tong-lyag(『黨議通略』)", but it does not reflect the political realities of the Yeong-jo reign.

This study deviates from the conventional view and evaluates the political justification of Noron and Lee Jae's Sinim-euli based on credentials as national policy of the later Yeongjo's period, which had been strengthened. Lee did not oppose Tangpyeong, though he clearly declared Yeongjo's rightful succession and the loyalty of the Noron officials who were unjustly sacrificed. In fact, the Tang-pyeong political situation was maintained even after 31 years of King Yeongjo, when Noron's loyalty was almost fully realized. As seen in the case of Lee-jae, It is asked to explain more strictly the political justification and political trends in Youngjo's period so that we reflect the view point of the time.

[Key Words] Lee-jae, Sinim-euli, Imin year's forgery affairs, Euli-Tanhpyeong, Noron-Junron

*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